

보도자료

2010년 8월 30일(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디지털방송정책과 유대선 과장(☎750-2330)
디지털방송정책과 최문용 사무관(☎750-2322) cmy1004@kcc.go.kr**“2012년 12월 31일 04시”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시 확정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대상 구체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시를 확정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아날로그TV 방송 종료일시 확정】

먼저, 시청자, 방송사 등이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을 “2012년 12월 31일 04시”로 정하였으며, 시범사업 지역인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제주특별자치도의 종료일시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2010년 9월 1일 오후 2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TV방송으로 전환하게 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대상 구체화】

아울러, 정부는 아날로그TV로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TV방송 수신에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대상에게는 디지털컨버터 1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디지털TV 구매시 일부금액을 보조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안테나 개보수 등의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정부지원 내용 〉

지원 대상(아날로그TV 직접수신가구)	지원 내용
①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① 디지털컨버터 1대 무상 제공하거나 ② 디지털TV 구매비용 보조(10만원)중에서 선택 ※ 필요시 안테나 무상지원 또는 개보수
②TV수신료면제자 중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시각·청각 장애인 가구	
③기타 (그 밖의 가구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기재부와 협의하여 정한 가구)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층 지원 대상가구 및 신청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금년 연말까지 고시로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사와 시청자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추진 일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충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발적인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TV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저소득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고품격의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디지털TV 보급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지원대상 규모 추정

지원대상 (아날로그TV 직접수신가구)		지원대상 규모(추정)
①기초생활수급권자		16.4만 가구
②TV수신료 면제가구	시청각장애인	3.8만 가구
	국가유공자 등	1.4만 가구
③기타 가구*		미정
합 계		21.6만 가구 + α

* 기타 가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

디지털전환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아날로그TV 방송 종료일시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 전국 아날로그TV 방송의 종료일시를 2012년 12월 31일 04시로,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함

* 종료일시 : 울진군(2010. 9. 1. 오후 2시), 강진군(2010. 10. 6. 오후 2시), 단양군(2010. 11. 3.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2011. 6. 29. 오후 2시)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대상 등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 (지원대상) 직접수인가구중에서 ①기초생활수급권자 ②TV수신료 면제대상이면서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시각·청각 장애인 가구 ③ 그밖에 가구의 소득·지출수준, 재산 상황, 생활실태 및 생계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기재부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지원내용) ①디지털컨버터 1대 무상제공 방식과 ②디지털TV 구매 비용의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안테나 개보수 또는 무상지원 가능

□ 시청자 지원체계 구축 운영(안 제11조의3 신설)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체계를 구축·운영